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 시행에 관한 세칙

<목차>

제 1 장 총칙	제1조 ~ 제4조
제 2 장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통칙	제5조 ~ 제12조
제2절 선거의 관리	제13조 ~ 제14조
제3절 동아리 총투표의 관리	제15조
제4절 재정	제16조
제 3 장 선거	
제1절 통칙	제17조 ~ 제20조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1조 ~ 제22조
제3절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23조 ~ 제31조
제4절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제32조 ~ 제33조
제5절 시행세칙협의모임	제34조 ~ 제37조
제6절 선거운동	제38조 ~ 제47조
제7절 유세 및 선전	제48조 ~ 제54조
제8절 투표 및 개표	제55조 ~ 제60조
제9절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제61조 ~ 제64조
제10절 선거 부정	제65조 ~ 제66조
제11절 당선무효	제67조 ~ 제68조
제12절 선거무효	제69조 ~ 제70조
제13절 징계	제71조 ~ 제72조
제 4 장 동아리 총투표	
제1절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	제73조 ~ 제82조
제2절 개표	제83조 ~ 제87조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Yonsei University The General Student Club Unio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에 따라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에 적용하며 조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선거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 분과위원회 선거와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선거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3조(선거 방침)

- 선거 공영제를 실시한다.
- 선거권은 각 중앙동아리에 최대 40인씩 주어진다. 단, 선거인단 등록 중에 최소 20인 이상 선거인단으로서의 등록을 필해야 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확정한다. 반드시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한다.
- 공명선거를 보장한다.

제4조(세칙 밖의 판단)

- 이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동아리운영위원회(이하 “동운위”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선관위”라 한다)는 본조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통칙

제5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동선관위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동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특별기구이다.

제6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동선관위는 동운위를 통해 중앙동아리 회원 3~10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 동선관위원은 동선관위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제7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 ① 동선관위원장은 동선관위를 대표한다.
- ② 동선관위원장은 동선관위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동선관위원장은 동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8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 ① 동선관위의 임기는 동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동선관위원은 중앙동아리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동선관위원 직위가 박탈된다.

제9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동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및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동선관위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된다.
- ② 동선관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단, 입후보자 등록 무효 및 취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 ① 동선관위는 동운위의 심의를 거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이하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는 동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될 수 없다.
- ④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는 선거 종료 시 해산한다.

제1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 동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상의 사무실을 둔다.
- 1.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2.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제2절 선거의 관리

제13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 의무와 역할)

- ① 동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동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5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동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④ 동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⑤ 동선관위는 선거운동본부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⑥ 동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⑦ 동선관위는 분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고받고 분과위원회 선거 관리를 지도·관리한다. 단,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 ⑧ 동선관위는 분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분과위원회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 ⑨ 동선관위는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회의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 ⑩ 동선관위는 분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관한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14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

동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될 수 없다.

제3절 동아리 총투표의 관리

제15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의무와 역할)

- ① 동선관위는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동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동아리 총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③ 동선관위는 동아리 총투표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④ 동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절 재정

제16조(선거운동본부의 분담금)

- ① 동선관위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이하 “시세협”이라 한다)에서 분담금의 액수를 협의해야 한다.
- ② 분담금의 액수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의 입후보 등록 이후 48시간 이내에 각 선본에 통보한다.
- ③ 각 선본은 투표시행일 5일 전까지 동선관위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각 선본은 분담금을 마감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선관위는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⑤ 동선관위는 각 선본에 부담이 최대한 가지 아니하도록 분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

제1절 통칙

제17조(선거시행원칙)

- ① 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를 보통·평등·간접·비밀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 타당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분과위원회나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경우 각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선본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 시기)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매년 2학기 말에 동선관위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② 그 밖의 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9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본에 속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언론단체의 공정보도의무)

본교의 언론단체는 선본 및 후보자의 의견, 토론회 등을 보도·논평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1조(선거권)

중앙동아리 당 최소 20인에서 최대 40인까지의 회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제22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칙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 3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 재적생
2. 본회의 회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8개월 이상 구성원으로 속한 자
3. 본회에 정식 등록된 중앙동아리 회장 10분의 3 이상을 포함하여, 중앙동아리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절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23조(선거공고)

동선관위는 선거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본부 명칭)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이하 “선본명”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운동본부 색상)

입후보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운동본부의 색상(이하 “선본색”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이하 “선본방”이라 한다)을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하로 둘 수 있다.
 1.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 ②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동선관위에 선본방의 사용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선본은 입후보 등록 이전에 해당 사무실의 관리자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본방 외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유세 선전물을 비치할 수 없다.
- ⑤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은 타 선본의 선본방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선본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의 사무실(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다만, 과/반/독립학부 및 동아리의 방은 예외로 한다.
 2. 본교의 언론단체의 사무실
 3. 학생총회·학생총투표·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의 사무실

제27조(입후보자 자격)

피선거권을 가진 자만 입후보할 수 있다.

제28조(출마 형태)

출마형태는 “정후보 1인”의 형태 또는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정한다.

제29조(구비 서류)

-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은 동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원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인 서명서
 3. 정·부후보 소견서 각 1매(A4용지 1장 이내)
 4. 정·부후보 재학증명서 각 1매
 5. 국문본 정책자료집 2부(1부는 출력하여 제출, 1부는 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
 6. 선관위 포스터용 자료 1부(입후보자 증명사진을 포함하여 파일형태로 제출)
 7.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 ③ 마감 시간은 마감일 18시로 한다.

제30조(연서)

- ① 기간은 이틀간 진행하며, 첫째날 09시부터 이틀날 18시까지로 한다. 단, 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본회에 정식 등록된 중앙동아리 회장 10분의 3 이상을 포함하여, 중앙동아리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제31조(등록무효)

- ①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본·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마감 30분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 ② 선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동선관위는 즉시 그 선본·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동선관위의 실수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21시까지 통보하여 미비 서류를 완비하여 익일 18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제32조(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 ① 동선관위는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동선관위원
 -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
 - 3. 총동아리연합회 선본원
 - 4. 각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
- ③ 단 본조 제2항제4호의 경우 각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에서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동선관위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5절 시행세칙 협의모임

제34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

시세협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제35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

시세협은 동선관위원과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하여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이견을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
- ② 이 세칙은 시세협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동선관위는 이 세칙에 따라 유권해석 한다.
- ③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선거운동본부방 사용을 합의한다.
- ④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제37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

- ① 동선관위장은 시세협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시세협을 소집한다. 다만, 정기소집일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
 - 1. 입후보 등록일
 - 2. 합동유세의 전달
 - 3. 투표의 전달
-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장은 동선관위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선본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서만 동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선거운동본부장의 역할을 선본원 중 1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선관위는 위임사유의 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선본에 통

보호하여야 한다.

- ⑤ 시세협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동선관위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유권해석 하여야 한다.

제6절 선거운동

제38조(선거운동의 정의)

-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거운동본부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이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39조(선거운동의 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 · 후보자의 개인유세
2. 선본 · 후보자의 강의실유세
3. 선본 · 후보자의 동아리방 유세
4. 선본 · 후보자의 합동유세
5. 선본 ·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6. 선본 ·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선전
7. 선본 · 후보자의 모임과 단체 방문
8. 선본 ·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9. 학내외 언론에의 보도

제40조(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 ① 선거운동 기간은 확정 공고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 ② 토요일 00시부터 월요일 아침 06시까지는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단,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③ 선거운동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④ 선거운동은 동선관위에 사전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시 동선관위에서 발부한 등록증을 패용해야만 한다.
- ⑤ 동선관위는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종을 판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한다.

제41조(추천인 서명)

- ①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 · 단체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②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 · 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 ③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해 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 · 성명 · 약력 및 출마의 변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 · 으뜸구호 · 기치 · 표시 및 정책의 기본방향
 3. 동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
- ④ 모든 연서판에는 동선관위 명의를 인증표식이 있어야 한다.
- ⑤ 이 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

제42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4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 2.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독립학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의 대표자와 집행부)
 - 3. 본교 언론단체의 구성원
 - 4. 학생총회 · 학생총투표 ·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
 - 5.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대표자
 - 6.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수수 받은 사람
- ② 선본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 ③ 이 세칙에서 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 회원 모두 선거의 선본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4조(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② 사퇴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5조(학생회 및 언론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 1. 학생회 공식기구(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독립학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 2. 학내에 속한 언론단체
 - 3. 학생총회 · 학생총투표 ·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
- ② 선본은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당 단체”라 한다)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동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선거 비용의 제한과 공개)

- ① 투표일 전날 18시까지 각 건물 대형 선전물 옆에 선거 비용을 공개한다.
- ② 선거 비용은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 ③ 동선관위는 본조 제2항을 위반한 선본에는 “주의” 조치를, 투표 전날 18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 선본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47조(그 밖의 사항)

이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동선관위에서 심의 후 동운위에서 논의 · 결정한다.

제7절 유세 및 선전

제48조(유세)

유세는 개인유세·강의실유세·동아리방유세·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06시부터 투표 전날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제49조(유세선전물)

- ① 배포되는 모든 인쇄 매체는 동선관위의 검인을 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인쇄 매체는 전량 수거한다. 고의적으로 배포하였을 시에는 매체는 전량 수거하고 동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② 리플렛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 2회에 걸쳐 발행한다.
 2. 1,2차 리플렛 총 부수는 1,000부 이상으로 한다. 자세한 부수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3. 리플렛의 크기는 A4 (210mm*297mm) 2매 이하로 한다.
 4. 선거참여 독려문구, 투표일 등을 표지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 ③ 정책자료집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량은 시세협에서 결정하며 각 선본에서 제작하고, 분과위원회 선거 자료집과 함께 동선관위가 합본으로 200부 이상으로 출판한다. 자세한 부수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2. 출판비는 동선관위가 총동아리연합회 예산에서 일정 정도 부담한다.
- ④ 대형 선전물(포스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 선전물은 A0 크기로 하고, 시세협에서 정한 위치에 동선관위에서 부착한다.
 2. 칼라 인쇄를 금한다.
- ⑤ 소형 선전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게시기간, 선거참여 독려문구, 임의 철거 및 훼손 금지 안내문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A4 크기로 제한하며, 칼라인쇄는 가능하다.
 3. 인쇄 개수와 부착 위치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⑥ 기타 유세선전물(선본옷, 피켓 등)의 경우 선본의 요청에 따라 시세협에서 정하여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온라인 선거유세)

- ① 온라인 선거유세는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후보자 및 선본원의 온라인 개인유세
 2. 선본의 온라인 선전물 게시
- ② 동선관위는 선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③ 후보자 및 선본원의 온라인 개인유세는 후보자 및 선본원의 본인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으로 이뤄지며 세부적인 방법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④ 각 선본은 온라인 유세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유세 선전물의 종류와 크기, 게시 횟수, 구체적인 게시처 그 밖의 사항은 시세협에서 합의한다.

제51조(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 ① 본교의 언론단체가 각 선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도를 허용하며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보도 여부는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② 본교의 언론단체는 각 선본의 공약·정책을 논평할 수 있다. 단, 후보자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공약·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합동 유세)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에서 합동유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 ③ 각 선본에 주어지는 시간은 15~20분으로 제한하며, 정확한 시간 제한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④ 합동유세에서 각 선본 간의 순서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⑤ 합동유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제53조(정책토론회)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에서 정책토론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정책토론회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③ 동선관위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언론출판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54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① 선본이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본은 동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② 동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8절 투표 및 개표

제55조(투표절차 및 기간)

- ① 투표는 선거공고에 앞서 동선관위에서 전자투표와 용지투표 중에서 하나를 정하여 시행한다.
- ② 동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최대 3일까지 투표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투표소)

투표소 설치 여부 및 위치는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설치 장소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신촌캠퍼스는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진행한다.
2. 국제캠퍼스는 Y플라자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제57조(투표소 선전물)

투표구에는 투표용지 사용법과 유의사항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한다. 단, 동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한다.

제58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선본명, 후보자 성명, 소속 동아리, 학번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투표용지는 동선관위에서 제작, 동선관위장의 검인을 필한 용지를 사용한다.

제59조(참관인)

반드시 각 선본별로 각 투표소와 개표소에 참관인 1인씩을 두어야 한다.

제60조(개표)

- ①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개표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1. 동선관위원장의 검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기입 표식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제9절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제61조(상대적 다수 대표제)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가 유효표의 50% 이상이고,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가 오차보다 클 시 해당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 득표수 1위와 2위 간의 표차가 오차보다 크면 득표수 1위 인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62조(당선공고)

동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63조(이의제기)

- ① 동운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선본에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 선본이 본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동선관위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본회 회원은 동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⑤ 동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당선을 확정하고 해산한다.

제10절 선거 부정

제65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 1. 누군가 투표 방해,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 3. 후보자가 동선관위원, 선본원 또는 유권자에게, 선본원이 동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4. 그 밖의 위에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66조(선거 부정의 판단)

- ①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동선관위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동운위에 “선거 부정 판단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동운위는 본조 제2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여야 한다.
- ④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11절 당선무효

제67조(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66조에 따라 선본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제69조에 따라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제68조(당선무효의 공고)

동운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절 선거무효

제69조(선거의 결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거쳐 선거를 무효로 한다.

1.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선거 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경우

제70조(선거무효의 공고)

동운위는 선거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 재선거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절 징계

제71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동운위는 선본·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본이 3회의 “경고”를 조치 받은 경우
2. 선본의 이중투표나 대리투표가 확인된 경우

제72조(제재조치)

① 동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동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선본이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취급(다만,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재를 조치한 이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A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2. 동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무효로 처리 (다만, 접수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한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 ③ 동선관위는 의도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본에게 “주의”와 “경고”를 구분하여 제재를 조치하여야한다.
- ④ 동선관위는 선본이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⑤ 동선관위는 선본이 3회 “주의”를 조치 받은 경우 “경고”로 전환한다.
- ⑥ 동선관위는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 1.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와 조치시기를 기재
 - 2. A4용지 크기(297*210mm)로 제작
 - 3.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을 사용
 - 4.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 (다만,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경고장을 철거한다.)

제4장 동아리 총투표

제1절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

제73조(진행기간)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기간은 동아리 총투표 실시 공고일부터 의결사항 확정공고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1. 동아리 총투표 실시 공고
- 2. 투표기간
- 3. 의결사항 공고
- 4. 이의제기 기간
- 5. 의결사항 확정공고

제74조(투표방법)

- ① 투표는 현장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하되, 1인 1표여야 한다.
-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투표구의 지정)

- ① 동선관위 투표구는 다음 각 호에 1개 이상 지정한다.
 - 1. 신촌캠퍼스
 - 2. 국제캠퍼스

제76조(투표구의 설치)

- ① 동선관위는 지정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② 기표소는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선관위원을 둔다.

제77조(투표소 운영시간)

- ① 동선관위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 ②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일의 종료일과 연장일에 한해 투표시간을 동선관위에서 3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전자투표의 투표 시간은 전자투표 서버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78조(투표소의 출입금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 1. 투표인
 - 2. 동선관위원
 - 3.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 동행한 도우미
-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동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해야 하며, 이 명찰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9조(투표용지, 투표함)

- ①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동선관위에서 정한다.
- ③ 투표용지에는 동선관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0조(투표함의 봉인, 보관)

- ① 동선관위는 투표시간 종료 후 동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해야 한다.
- ② 동선관위는 봉인한 투표함을 동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 ③ 동선관위는 투표함을 동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동선관위의 관리하에 보관해야 한다.

제81조(투표의 연장)

투표일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동선관위는 최대 2일에 한하여 투표를 연장할 수 있다.

제8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로의 투표·개표 관련 실무 위임)

- ①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동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동선관위는 위임받은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의결 요건은 해당 단위의 세칙을 따른다.

제2절 개표

제83조(개표시작과 순서)

-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 2.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에 달함
 -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 4. 동선관위장 및 3분의 2 이상의 동선관위원 참석
 -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제84조(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동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제85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하나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였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86조(개표일과 개표장소)

- ① 개표일은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동선관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개표장소는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87조(의결사항 공고 및 이의제기)

- ① 동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의결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② 의결사항 공고 후 24시간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한다.
- ③ 본회 회원은 투표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투표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동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④ 동선관위는 이의제기 사항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